

관리번호

-

(

년 귀속

)

주식등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소명자료 제출서)

1. 양도인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주소				거주지국 국적	거주지국코드 국적코드
2. 양수인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양도인과의 관계	
	주식1					
	주식2					
	주식3					

구분	①종목명	②종목코드	③국내외 구분	④종류코드	⑤양도유형	⑥양도일	⑦취득유형	⑧취득일	⑨취득유형별 주수
주식A									
주식B									
주식B									

구분	양도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⑩주당 양도가액	⑪양도가액 (⑨×⑩)	⑫주당 취득가액	⑬취득가액 (⑨×⑫)	⑭기타 필요경비	⑮합계 (⑪-⑬-⑭)	⑯비과세	⑰과세대상 (⑮-⑯)	⑱기신고 등
합계									
주식A									
주식B									
주식B									

⑲양도소득 기본공제	⑳과세표준 (⑰-⑱-⑲)	㉑세율	㉒산출세액 (⑲×㉑)	㉓전자신고 세액공제	㉔가산세	㉕기신고·결정·경정세액	㉖납부할 세액 (㉒-㉓-㉔)	㉗분할할 세액	㉘납부세액 (㉒-㉓)

6. 필요경비 상세내역									7. 가산세 상세내역				
구분	6-1. 취득가액				6-2. 기타 필요경비				합계	무신고 · 과소신고	납부 지연	기타	
	합계	매입가액 상세내역			기타	합계	증권 거래세	농특세					기타
		매입가액	매입가액 구분	매입가액 산출방법									
합계													
주식1													
주식2													
주식3													

8. 소명자료제출서로 활용하는 경우: "1. 양도인(신고인)"부터 "3. 양도한 주식등 상세내역"까지 작성하고 소명자료 첨부하여 제출
신고인(양도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양도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신고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 주식을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원천징수된 경우는 제외).

첨부서류 1.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사본, 2.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 3.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방법

1. 양도인(신고인)

-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거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내·외국인'란 및 '거주구분'란의 괄호 안에 "√"표시를 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참고하여 국적(국적코드)과 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을 적습니다.

2. 양수인

- 주식을 양수한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손녀 등

3. 양도한 주식등 상세내역

- ① 종목명: 주식발행법인명을 적습니다.
- ② 종목코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주식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주식종목코드를 적으며, 종목코드가 없는 그 밖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국외주식의 경우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를 적으며 해당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소재 국가명을 적습니다.
- ③ 국내/외 구분: 국내주식이면 1 국외주식이면 2를 적습니다.(국외주식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④ 종류코드: 주식등의 종류에 따라 부여된 코드를 적습니다.

종류	비상장주식등					상장주식등					기타자산 중 주식등 양도분 - 비사업용 토지	국외주식등		
	주권등 비상장법인					주권등 상장법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외 법인	
	중소기업 소액주주	중소기업 대주주	중소기업 외 법인 소액주주	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	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기업 소액주주	중소기업 대주주	중소기업 외 법인 소액주주	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	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코드	31	34	32	35	33	코스피 43 코스닥 21 코넥스 71	코스피 44 코스닥 24 코넥스 74	코스피 42 코스닥 22	코스피 45 코스닥 25	코스피 41 코스닥 23	51	52	62	61

※ 국외주식등란의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합니다.

- ⑤ 양도유형: 매매인 경우 1, 국외전출 시 주식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2를 적습니다.
- ⑦ 취득유형: 다음의 주식등 취득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

취득유형	매매	공모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합병	증여	상속	출자	기타
코드	1	2	3	4	5	6	7	8	10	9

- ⑨ 취득유형별 양도주식등 수: 양도주식등의 수를 적되, 양도하는 주식등의 취득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취득유형별로 각각 적습니다.

4. 양도소득금액 계산

- ⑩ 주당양도가액: 양도하는 주식등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 ⑪ 양도가액: 양도하는 주식등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으며, 국외자산은 원화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⑫ 주당취득가액
 - 취득유형별로 취득한 주식등의 1주당 가액(상속·증여취득의 경우 법령에 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 취득한 주식등의 1주당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해당정부 평가액, 매매사례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
- ⑬ 취득가액: 주식등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6-1. 취득가액 상세내역' 합계란 금액)
- ⑭ 기타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를 적고('6-2. 기타 필요경비' 합계란 금액),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계'란에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 ⑮ 양도소득기본공제: 거주자별로 연간 250만원을 공제 합니다.
- ⑯ 세율: 아래 표와 「소득세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참고하여 주식등의 종류에 맞는 세율을 적습니다.

종류	비상장주식등					상장주식등					기타자산 중 주식등 양도분 - 비사업용 토지	국외주식등	
	주권등 비상장법인					주권등 상장법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외 법인
	중소기업 소액주주	중소기업 대주주	중소기업 외 법인 소액주주	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	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기업 소액주주	중소기업 대주주	중소기업 외 법인 소액주주	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	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세율	10%	20~25%	20%	20~25%	30%	10%	20~25%	20%	20~25%	30%	누진	누진	10% 20%

- ⑫ 산출세액: ⑮란의 과세표준에 ⑯란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적습니다.
- ⑬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2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⑫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⑭ 가산세: '7. 가산세 상세내역'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 ⑮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분납 하려는 경우 해당 세액을 적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6. 필요경비 상세내역

- '6-1. 취득가액'의 '매입가액 구분'란에는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6-1. 취득가액'의 '매입가액 산출방법'란에는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상이한 경우 매입가액 산정방법(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중평균법 등)을 적습니다.
- '6-1. 취득가액'의 '기타'란에는 매입가액을 제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6-2. 기타 필요경비'의 '기타'란에는 증권거래세와 농특세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 산정 시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7. 가산세 상세내역

- '무신고·과소신고'란에는 산출세액에 기한 내 신고 불이행에 따른 무(과소)신고 가산세(일반무신고 20%, 부당무신고 40%, 일반과소신고 10%, 부당과소신고 40%)를 계산하여 적습니다.
- '납부지연'란에는 산출세액에 기한 내 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1일 2.5/10,000(2019. 2. 11.까지 1일 3/10,000)]를 계산하여 적습니다.